



2024년 법인세 신고대비

세액공제·감면 제도 안내

국세청 법인세과

Contents

- I → 고용지원
- II → 투자촉진 지원
- III → 중소기업 지원
- IV → 연구·인력 개발지원
- V → 기타지원

I. 고용지원

- 01)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02)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03)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 04)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05) 통합고용세액공제

01)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개요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

- 전년대비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부터 2년(중소·중견기업 3년)간 세액공제 적용

 적용대상 · 공제액

- (대상)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법인 사업자

*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숙박업 제외), 주점업(외국인전용유희음식점 및 관광유희음식점업 제외)

- (공제액)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 증가인원 × 다음의 금액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청년 등* 상시근로자	1,100만원	1,200만원	800만원		400만원	
그 외 상시근로자	700만원	770만원	450만원		-	

* 청년(15세 ~ 29세), 노령자(60세 이상), 장애인, 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 받은자

 사후관리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1차 연도) 종료 후 2년 이내에 1차 연도 대비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한 경우
 - ▶ ①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세액공제 적용배제, ② 감소한 과세연도에 감소인원 × 1인당 해당 공제액을 추가납부

02)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개요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

- 전년대비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세액공제 적용
* 공제받은 과세연도 다음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은 경우 1년 추가 공제

적용대상 · 공제액

- (대상)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 (공제액) 증가인원 1인당 사회보험료 부담금액* × 다음의 공제율
*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의 총급여액 × 약 10% (사회보험료율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구 분	청년 등 상시근로자 경력단절 여성근로자	그 외 상시근로자	
		신성장서비스업*	기타
공제율	100%	75%	50%

* 컴퓨터 프로그래밍,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엔지니어링사업,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 물류산업 등

사후관리

- 공제기간 중에 전년대비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한 경우('22.1.1. 이후 개시 과세연도부터 적용)
▶ ①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세액공제 적용배제, ② 감소한 과세연도에 감소인원 × 1인당 해당 공제액을 추가납부

03) 정규직 근로자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제도개요

- '22.6.30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23.12.31.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세액공제 적용
 - *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된 기간제 근로자
 - * 정규직 전환: 기간 정함없이 근로계약 체결,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 중소기업에게 제조 등을 위탁한 사업자가 직접 고용 등

적용대상 · 공제액

- (대상)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되지 않은 **중소 · 중견기업**
- (공제액) 정규직으로 전환한 인원(1인당, 특수관계인 제외) × 다음의 공제액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제액	1,300만원	900만원

사후관리

- 정규직으로 전환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
 - ▶ 근로관계 종료한 과세연도에 종료한 인원의 세액공제액을 법인세에 추가 납부

04)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개요

-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전년대비 증가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세액공제 적용

적용대상 · 공제액

-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 사업자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년 평균임금증가율 **의 평균보다 클 것
 - * (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 - 직전과세연도 평균임금) ÷ 직전 과세연도 평균임금, **중소기업의 경우 (3.2%)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을 것
- (공제액) $\left\{ \begin{array}{l} \text{㉠} (\text{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 증가분} \times \text{다음의 기본 공제율}) + \\ \text{㉢} (\text{해당 과세연도의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 증가액} \times \text{다음의 추가 공제율}) \end{array} \right\}$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그 외
기본 · 추가 공제율	20%	10%	5%

사후관리

- 추가공제 (㉢) 시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
 - ▶ 근로관계 종료한 과세연도에 종료한 인원의 추가공제액을 법인세에 추가 납부

05)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개요(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 적용)

- 고용과 관련된 분산된 세액공제를 통합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일부 세액공제 조건

적용대상 · 공제액

- (대상)**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법인 사업자**

*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숙박업 제외), 주점업(외국인전용유희음식점 및 관광유희음식점업 제외)

- (공제액)**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 증가인원** × 다음의 금액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수도권	수도권 밖	수도권	수도권 밖	수도권	수도권 밖
청년 등* 상시근로자	1,450만원	1,550만원	800만원		400만원	
그 외 상시근로자	850만원	950만원	450만원		-	
정규직전환·육아휴직 복귀	1,300만원		900만원		-	

* 청년(15세 ~ 34세), 노령자(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상이자 등

사후관리

- 2년 이내 **상시근로자수 감소**, 정규직 전환 또는 육아휴직 복귀자와 **2년** 이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

▶ 공제금액 상당액 추징

II. 투자촉진 지원



01) 통합투자세액공제

0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증설
투자에 대한 감면배제

01) 통합투자세액 공제

제도개요

- 기업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와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등을 통합 일원화하여 '21년부터 시행
- '21.12.31.까지 투자완료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과 통합세액 공제 중 선택적용 가능

종전 (자산별 구분)

- ①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 ② 특정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③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 시설
- ④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 ⑤ 초연결(5G) 네트워크 시설



개정 (통합)

통합투자세액공제

- ① 공제대상 : 사업용 유형자산, 무형자산
- ② 공제제외 :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비품
선박 및 항공기
연와조, 블록조, 철근콘크리트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과 구축물 등

01) 통합투자세액 공제

적용대상 · 공제액

- (대상) 소비성서비스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외 **법인**(과세특례 적용 조합법인 제외) **사업자**
- (공제액) {당해연도 투자액 × 공제율} + {(당해연도 투자액 - 직전3년 평균 투자액) × **3%(국가전략 4%)**}

구분	일반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공제율	2023년	공제율	2023년	공제율	2023년
중소기업	10%	12%	12%	18%	25%	25%
중견기업	5%	7%	6%	10%	15%	15%
일반기업	1%	3%	3%	6%	15%	15%

- (공제시기) 2개 과세연도에 걸쳐 투자되는 경우 : 투자되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투자액에 대해 공제 적용
 * {(당해연도 투자액 - 직전3년 평균 투자액) × **3%(국가전략 4%)**} 은 {당해연도 투자액 × 공제율} 의 2배 한도 적용

사후관리

- 투자완료일로부터 **2년 내**(특정 시설 · 업종 유 · 무형자산 중 건축물 등 **5년**)에 해당 자산을 처분 · 임대한 경우
- 투자완료일로부터 **5년 내**에 해당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한 경우
 - ▶ 사유발생시 세액공제 받은 과세연도에 **세액공제액**과 **이자상당액**(日 0.025%, 2022.2.15. 이후 0.022%)을 **가산**하여 납부

0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증설투자에 대한 감면배제

제도개요

- 수도권 과밀 방지 및 지방 투자 유인을 위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증설투자 세액공제 배제

감면배제대상

<사업개시 시기 및 규모에 따른 증설·대체투자의 공제 여부>

구 분	1990.1.1. 이후 사업개시		1989.12.31. 이전 사업개시	
	증설투자 ¹⁾	대체투자 ²⁾	증설투자	대체투자
일반기업	X (정보통신장비 등○)	X	X (산업단지·공업지역·정보통신장비 ○)	○
중소기업	X (산업단지·공업지역·정보통신장비 ○)	○	X (산업단지·공업지역·정보통신장비 ○)	○

1) 증설투자 : 공장(사업장)에 사업용 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해당 공장(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사업용 고정자산의 수량이 증가되는 투자

2) 대체투자 : 기존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대체하기 위한 투자

- 정보통신장비, 디지털방송장비, 에너지절약시설 등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증설투자도 세액공제 허용
- 본사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소재 시 과밀억제권역 밖 소재 공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기계장치는 세액공제 적용

Ⅲ. 중소기업 지원

01 중소기업의 범위

02 중소기업관련 주요 공제·감면제도

03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04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05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01) 중소기업의 범위

“제도개요”

조세특례
지원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할 경우,

다양한
조세지원 제도
적용 가능

“중소기업의 요건

(아래 요건 모두 충족) ”

- ① **업종기준** :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을 것
- ② **규모기준** :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 이내일 것
- ③ **독립성기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등에 속하지 않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독립성 기준에 적합할 것
- ④ **졸업기준** : 위 ①, ②, ③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이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유예제도”

규모의 확대(매출초과)
or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중소기업 미 해당 시

✓ 해당연도와
그 다음 3개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간주

01)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중소기업 규모기준

1,500억 원 이하

- 의복, 가죽, 가방 제조
- 펄프, 종이 제조
- 1차 금속 제조
- 전기 장비 제조
- 가구 제조

1,000억 원 이하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 식료, 담배, 섬유 제조
- 화학, 고무, 금속 제조
- 전기, 전자, 기계 제조
- 수도, 건설, 도소매업

800억 원 이하

- 음료 제조업
- 의료물질, 의약품 제조
- 비금속, 광학기기 제조
- 운수, 창고, 정보통신

600억 원 이하

- 보건, 사회복지 서비스
- 예술, 스포츠 등 서비스
- 산업용 기계, 장비 수리

400억 원 이하

- 숙박 및 음식점업
- 임대업, 부동산업
- 금융 및 보험업

02) 중소기업관련 주요 공제·감면 제도

공제·감면제도 요약

규정	조특법	특례내용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6	소재지·업종·사업자별 50~100% 감면율 차등
위기지역창업 감면	§99의9	최초 5년 100%감면 적용 후 그다음 2년 50% 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7	규모·소재지·업종별 5~30% 감면율 차등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7의4	결제일별 0.5%~0.15% 공제율 차등
통합투자세액공제	§24	규모·투자대상 자산별 1%~16% 기본공제 및 3~4% 추가공제
고용증대 세액공제	§29의7	규모·소재지·상시근로자별 4백만원~13백만원 공제액 차등 규모별 특례기간 차등
사회보험료세액공제	§30의4	상시근로자별 50%~100% 공제율 차등 (일부업종 공제율우대)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 감면	§63의2	최대 10년간 100%, 50% 감면율 적용 (이전 후 지역별 감면기간 상이) *중소기업의 경우 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으로도 특례적용
공장의 수도권 밖 이전 감면	§63	최대 10년간 100%, 50% 감면율 적용 (이전 후 지역별 감면기간 상이) *중소기업의 경우 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으로도 특례적용

02) 중소기업관련 주요 공제·감면 제도

공제·감면제도(요건)

규 정	조특별	요 건			사후관리	농특세	최저한세
		규모	소재지	업종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6	○	○	○	○	비과세	적용 (추가 및 소규모창업 적용제외)
위기지역창업 감면	§99의9	x	○	○	○	비과세	100%감면분 제외 50%감면분 적용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7	○	○	○	x	비과세	적용대상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7의4	○	x	○	x	과세	적용대상
통합투자 세액공제	§24	x	x (대체증설투자○)	○	○ (이자상당액 추가납부)	과세	적용대상
고용증대 세액공제	§29의7	x	x	○	○	과세	적용대상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30의4	○	x	x	○	비과세	적용대상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감면	§63의2	x	○	○	○ (이자상당액 추가납부)	비과세	적용제외 (양도차익 과세이연 적용)
공장의 수도권 밖 이전감면	§63	x	○	○	○ (이자상당액 추가납부)	비과세	적용제외 (성장관리, 자연보전권역 이전 적용)

03)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도

제도개요

- 중소기업이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세액감면 적용

적용대상 · 감면액

- (대상)**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 ①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 ②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 요건 충족
- (감면액)** 산출세액 × (감면대상 소득 ÷ 과세표준) × 감면율

구분	제조업 등		도·소매, 의료업		알뜰주유소('23년까지)		통관대리 등	
	수도권 내	수도권 외	수도권 내	수도권 외	수도권 외	수도권 내	수도권 외	수도권 내
중기업	-	15%	-	5%	15%	10%	7.5%	-
소기업	20%	30%	10%	10%	20%	20%	15%	10%

* (감면한도) 1억원 -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감소인원 × 5백만원 (알뜰주유소 석유판매업 소득은 감면한도 없음)

사후관리

- 별도의 사후관리 규정 없음

04) 창업 중소기업감면제도



제도개요

- 중소기업이 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부터 5년간 세액감면 적용



적용대상 · 감면액

- (대상)** 감면대상 18개 업종을 영위하는 다음의 창업중소기업
 - ① 창업중소기업(청년 · 소규모 창업기업 포함), ②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 ③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 ④ 창업 과세연도 포함 4년 이내에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
- (감면액)**
 - ① (기본감면) 산출세액 × (감면대상 소득 ÷ 과세표준) × 감면율
 - ② (추가감면) 산출세액 ×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비율 × 50% (청년, 소규모 제외)

구 분	일반창업		벤처 · 에너지신기술기업		청년 · 소규모 창업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기본	신성장	기본	신성장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	-	50%(5년)	75%(3년)+50%(2년)	50%(5년)	50%(5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50%(5년)	75%(3년)+50%(2년)	50%(5년)	75%(3년)+50%(2년)	100%(5년)	50%(5년)



사후관리

-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 해당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세액감면 배제(이전 과세연도 감면세액 추징하지 않음)

05)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개요

- 중소·중견기업에 상생결제제도*로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한 과세연도에 세액공제 적용
* 만기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만기일 이전에도 구매기업이 지급한 외상매출채권을 낮은 수수료로 현금화 하는 제도

적용대상·공제액

- **(대상)** 상생결제를 통해 구매대금을 지급한 중소·중견기업
- 어음 결제 비율이 전년 대비 증가하지 않을 것
- **(공제액)**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세금계산서 등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이 60일 이내) × 다음의 공제율

세금계산서 등*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	15일 이내	16일 ~ 30일	31일 ~ 60일
공제율	0.5%	0.3%	0.15%

*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계산서 및 영수증

사후관리

- 별도의 사후관리 규정 없음

IV. 연구·인력개발 지원

01)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02)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03)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서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01)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개요

-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세액공제 적용

적용대상 · 공제액

- **(대상)** 연구·인력 개발비를 지출한 법인 사업자
- **(공제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해당비용 × 공제율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일반중소	유예기업	일반중견	코스닥중견	
일반 (선택)	당기분	25%	~3년차 15%, ~5년차 10%	8%		~2%
	증가분	50%		40%		25%
신성장·원천기술		30%~40%		20%~30%	25%~40%	20%~30%
국가전략기술 (21.7월 지출분부터)		40%~50%		30%~40%		30%~40%

사후관리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연구개발(창작) 전담부서의 인증이 취소된 경우
 - ▶ 해당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 또는 사유 발생일 이후부터 세액공제 배제

02)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개요

-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세액공제 적용

적용대상 · 공제액

-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영성과급을 지급한 중소기업
 - ①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성과급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 약정하고 지급하는 성과급
 - ② 영업이익 발생한 기업이 지급하는 성과급
 - ③ 해당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대비 감소하지 아니할
- (공제액)** 지급한 경영성과급 × 다음의 공제율

구분	경영성과급 지급 중소기업
공제율	15%

-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은 상시근로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50% 감면

* 제외 :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 최대주주 ·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 직계존비속 ·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등

사후관리

- 별도의 사후관리 규정 없음

03)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서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개요

-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세액공제 적용

적용대상 · 공제액

- **(대상)**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등을 제외한 **내국법인**
 - ① 출자대상 :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출자
 - ② 출자방법 : 기업 설립시 자본금 납입 또는 기업 설립 후 7년 이내 유상증자 대금 납입
- **(공제액)** 출자지분 취득금액 × 공제율

구분	내국법인(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제외)
공제율	5%

* 제외 : 법인세법상 특수관계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사후관리

- 출자지분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피출자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 ▶ 사유발생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세액공제액과 이자상당액(日 0.025%, 2022.2.15. 이후 0.022%)을 가산하여 납부

V. 기타지원 조세특례

- 01)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등 감면
- 02)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 03)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04)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05)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01)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등 감면



제도개요

- 사회적기업 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경우 해당 과세연도부터 5년간 세액감면 적용



적용대상 · 감면액

- (대상)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법인 사업자
- (감면액) 산출세액 × (감면대상 소득 ÷ 과세표준) × 다음의 감면율

구 분	사회적 기업	장애인 표준사업장
최초 소득발생연도부터 3년간	100%	100%
그 다음 2년간	50%	50%
감면 한도	1억원 + 취약계층* 상시근로자수 × 2천만원	1억원 + 장애인 상시근로자수 × 2천만원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으로 5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및 북한이탈 주민 등이 해당



사후관리

- 사회적 기업 인증 취소,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 미달 또는 부정하게 지원받은 경우
 - ▶ 해당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 배제 및 이자상당액(日 0.025%, 2022.15. 이후 0.022%)을 가산하여 납부

02)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도개요

- 위기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7년간 세액감면 적용
*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에 따른 고용재난지역 또는 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적용대상 · 감면액

- (대상) 감면대상업종* 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법인 사업자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창업중소기업 감면 업종 18개)
- (감면액) 산출세액 × (감면대상 소득 ÷ 과세표준) × 다음의 감면율

구분	최초 소득발생연도부터 5년간	그 다음 2년간
감면율	100%	50%

* 감면한도(중소기업 외 적용): (가) + (나)

(가) 감면 해당 과세연도까지 사업용자산 투자액 × 50%

(나) 해당 과세연도에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 및 서비스업의 상시근로자 2천만원)

사후관리

- 감면대상 과세연도 후 2년내에 감면대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보다 감소한 경우(중소기업은 사후관리 제외)
 - ▶ 해당사유 발생 과세연도에 감소인원에 1천5백만원(청년 등 2천만원)을 곱한 금액을 추가 납부
- 감면적용 이후 감면대상 사업장 등을 폐업·해산, 지역 이전하는 경우
 - ▶ 해당사유 발생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가 납부

03)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개요

-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세액공제 적용

적용대상 · 공제액

- **(대상)**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 사업자
 - * 임차인 요건(모두 충족): 소상공인, 임대건물을 영업용으로 사용,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업종 제외, 임대인과 비특수관계자
- **(공제액)** 해당 과세연도 임대료 인하액* × 공제율
 - * 임대료 인하 직전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료에서 실제로 차감한 임대료 금액

구분	법인
공제율	70%

사후관리

- 임대료를 인하한 과세연도와 다음연도 6월까지 인하 직전대비 임대료 · 보증금을 인상한 경우
 - ▶ ① 인하한 과세연도에 사유 발생시 세액공제 적용배제 ② 인하한 다음 과세연도에 사유 발생시 이미 공제받은 세액 추징

04)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개요

-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최대 10년간 세액감면 적용

적용대상 · 감면액

- **(대상)** 공장이전 기업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법인 사업자
 - ① 부동산업(임대, 중개, 매매),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것
 - ②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중소기업 2년)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한 기업의 전부이전
 - ③ 이전 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할 것
- **(감면액)** 산출세액 × (감면대상 소득 ÷ 과세표준) × 다음의 감면을

구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소재)	이전 후 소재지 (수도권 밖)	100% 감면	50% 감면
중소기업 및 그 외	낙후지역(수도권 밖의 일반지역 외)	초반 10년	이후 2년
	일반지역(수도권연접지역, 인구30만이상 도시, 5대 광역시 내 산업단지(중소기업은 광역시))	초반 7년	이후 3년
중소기업	수도권 일반지역(자연보전권역, 성장관리권역, 단, 본사가 과밀억제권역내 있는 경우본사도 이전)	초반 5년	이후 2년

사후관리

- 이전 후 ①3년 이내 폐업 · 해산시, ②사업 미개시, ③수도권에 동일한 공장을 설치한 경우
 - ▶ {① 3년 이내 감면된 세액, ② · ③ 5년 이내 감면된 세액} + **이자상당액**(日 0.025%, 2022.15. 이후 0.022%)을 가산하여 납부

05)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개요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한 달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적용대상 · 공제액

- **(대상)** 용역제공자¹⁾에 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과세자료를 성실하게 기재하여 제출기한²⁾ 내 국세정보통신망(홈택스·손택스)을 통해 제출한 사업자
 - 1)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캐디, 간병인, 대리운전, 퀵서비스, 가사도우미, 물품운반원, 중고자동차판매원, 육실종사원,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 9개 업종
 - 2) 용역제공자의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공제액)** 용역제공자 인원 수 × 300원 (한도 200만원, 최소 1만원)
- **(적용기한)** '26.12.31.까지 발생한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과세자료 제출분

참고자료

1. 상시근로자 개념 및 제외대상 등
2. 최저한세 개념 및 계산방식 등
3. 농어촌특별세 개념 및 계산방법 등
4. 세액공제 · 감면 간 중복적용 배제

01. 상시근로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또는 제17조 제1항



상시근로자 개념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상시근로자 제외대상

- ① 근로계약이 1년 미만인 근로자, ② 근로기준법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월 60시간 이상 근로자는 제외),
- ③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임원, ④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
- ⑤ ④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및 친족관계(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등),
- ⑥ 원천징수 미이행자 중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사회보험 등 미납자, ⑦ 총급여 7천만원 이상 근로자*

*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 세액공제와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액공제에만 적용됨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과세연도 매월 말 상시근로자 수 합 ÷ 과세연도 개월 수

※ 특수한 경우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

- 창업한 경우 : 0
- 합병 · 분할 · 사업양수 등인 경우 : 기존 사업의 상시근로자 수

01. 상시근로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또는 제17조 제1항



상시근로자 관련 법인세 공제 · 감면은 21개,
공제 · 감면별 상시근로자 제외기준을 별도로 규정함

< 상시근로자 제외기준 >

- ① 근로계약이 1년 미만인 근로자, ② 근로기준법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월 60시간 이상 근로자는 제외),
- ③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임원, ④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 ⑤ ④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및 친족관계,
- ⑥ 원천징수 미이행자 중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사회보험 등 미납자, ⑦ 총급여 7천만원 이상 근로자*

*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 세액공제와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액공제에만 적용됨

< 상시근로자 관련 공제 · 감면 유형 >

- ㉠ 고용증가시 세액공제, ㉡ 고용유지시 세액공제, ㉢ 고용증가시 추가감면(감면비율 추가),
- ㉣ 고용증가시 감면한도 증가, ㉤ 고용감소시 감면한도 축소

순번	상시근로자 관련 공제 · 감면 유형	조특법	공제 · 감면	공제 · 감면시 상시근로자 제외기준 적용 여부	
				① ~ ⑥	⑦
1	㉠ 고용증가시 세액공제	§29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
2		§30의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
3	㉡ 고용유지시 세액공제	§19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	○
4		§29의3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
5		§29의4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

01. 상시근로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또는 제17조 제1항

순번	상시근로자 관련 공제 · 감면 유형	조특법	공제 · 감면	공제 · 감면시 상시근로자 제외기준 적용 여부	
				① ~ ⑥	⑦
6	㉞ 고용유지시 세액공제	§30의3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7	㉟ 고용증가시 추가감면	§6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
8	㊱ 고용증가시 감면한도 증가	§12의2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	×
9		§64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	×
10		§85의6	사회적기업 기업에 대한 감면	○	×
11		§85의6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	○	×
12		§99의9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	○	×
13		§121의8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	×
14		§121의9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	○	×
15		§121의17	기업도시 창업 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16		§121의2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	×
17		§121의21	금융중심지 창업 등에 대한 감면	○	×
18		§121의22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기업 등 감면	○	×
19		§121의22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	×
20		㊲ 고용감소시 감면한도 축소	§7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

참고 1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계산사례

① '23년 직원 현황('23.1월초 기준 상시근로자 10명, 연중 입사자 4명, 연중 퇴사자 1명)

번호	이름	입사일	퇴사일	총급여	비고	번호	이름	입사일	퇴사일	총급여	비고
1	정부가	090801	-	65백만원	근로계약 1년 이상	8	박순진	200101	-	15백만원	급여 원천징수미이행
2	임소득	090901	-	64백만원	근로계약 1년 이상	9	야무진	200303	-	12백만원	월 48시간 근무
3	유소비	091001	-	63백만원	근로계약 1년 이상	10	강소유	190506	'23.03.15	20백만원	근로계약 1년 이상
4	김원천	091101	-	62백만원	근로계약 1년 이상	11	이준수	230430	-	20백만원	근로계약 1년 미만
5	나법인	100101	-	60백만원	최대주주	12	원강직	230501	-	35백만원	근로계약 1년 이상
6	조세심	100101	-	40백만원	감사	13	유성실	230701	-	35백만원	근로계약 1년 이상
7	나모범	180101	-	50백만원	나법인의 자	14	김영민	231001	-	75백만원	총급여 7천만원 이상

② 상시근로자 계산 (67명 ÷ 12개월 = 5.58명)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월초 근로자	10	10	10	9	10	11	11	12	12	12	13	13	
입사(+)				+1 이준수	+1 원강직		+1 유성실			+1 김영민			
퇴사(-)			△1 강소유										
월말 근로자	10	10	9	10	11	11	12	12	12	13	13	13	
상시근로자 제외자*	5 ¹⁾	5 ¹⁾	5 ¹⁾	6 ²⁾	6 ²⁾	6 ²⁾	6 ²⁾	6 ²⁾	6 ²⁾	6 ²⁾	6 ²⁾	6 ²⁾	
상시근로자 최종	5	5	4	4	5	5	6	6	6	7	7	7	67

1) 나법인(최대주주), 조세심(임원), 나모범(최대주주 직계존비속), 박순진(원천징수 미이행자), 야무진(단시간 근로자),

2) 1)에 이준수(1년 미만 근로자) 추가

※ 김영민(총급여 75백만원)은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 세액공제와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적용시에만 상시근로자 수 제외(본 사례 포함)

참고 2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사례 (20년 고용 감소시 추가납부 유예 적용)

< 2020년 고용감소시 추가납부 유예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⑤⑥⑦, '21.3.16. 개정 >

구분	종 전	개 정
사후 관리	'18년('19년) 대비 '20년에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20년에 추가납부* *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 해당 상시근로자 공제세액	'20년에 추가납부 유예
세액 공제 적용	'18년('19년) 대비 '20년에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20년부터 세액공제 배제	'20년에 세액공제 배제 {'18년(19년)대비 고용유지시 '21년('22년)에 세액공제 가능}
	'18년('19년) 대비 '20년에 상시근로자를 유지한 경우	
	'20년에도 세액공제 적용	'20년에도 세액공제 적용

참고 2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사례 (20년 고용 감소시 추가납부 유예 적용)

[①] 수도권 밖 중소기업이 2019년에 고용증대세액공제 최초 적용

'19년 대비 '20년 고용 감소(5명 → 3명), '21년 고용 감소(5명 → 4명), '22년 고용 증가(5명 → 7명)한 경우

년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	1차년도	유예	2차년도	3차년도
청년 상시 근로자수	4명	5명	3명	4명	7명

* 청년 1인당 12,000,000원 공제 (2021·2022년 귀속 청년 1인당 13,000,000원 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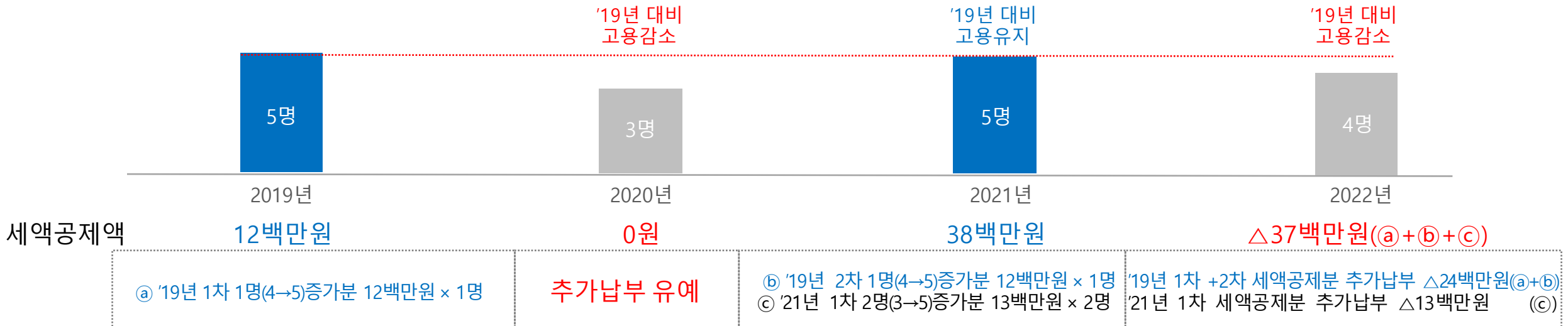
참고 2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사례 (20년 고용 감소시 추가납부 유예 적용)

[②] 수도권 밖 중소기업이 2019년에 고용증대세액공제 최초 적용

'19년 대비 '20년 고용 감소(5명 → 3명), '21년 고용 유지(5명 → 5명), '22년 고용 감소(5명 → 4명)한 경우

년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	1차년도	유예	2차년도	3차년도
청년 상시 근로자수	4명	5명	3명	5명	4명

* 청년 1인당 12,000,000원 공제 (2021·2022년 귀속 청년 1인당 13,000,000원 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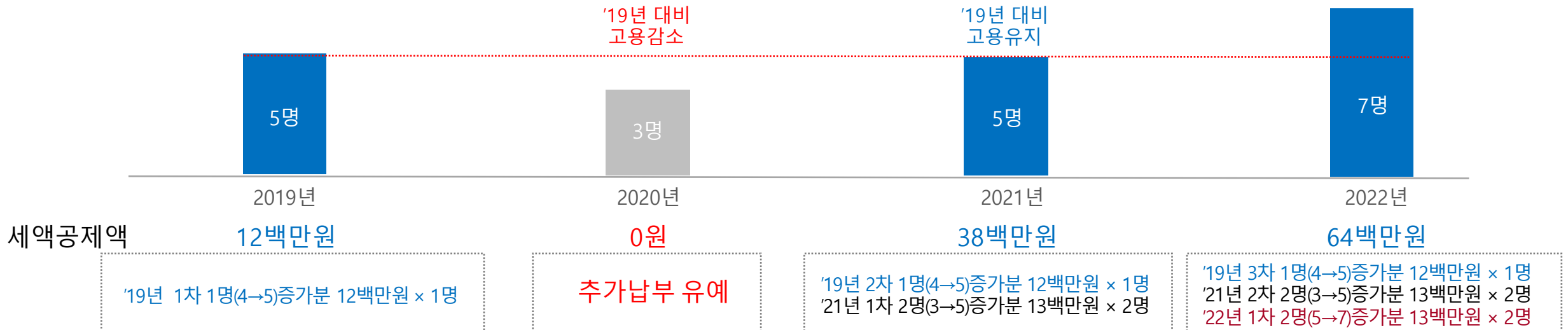
참고 2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사례 (20년 고용 감소시 추가납부 유예 적용)

③ 수도권 밖 중소기업이 2019년에 고용증대세액공제 최초 적용

'19년 대비 '20년 고용 감소(5명 → 3명), '21년 고용 유지(5명 → 5명), '22년 고용 증가(5명 → 7명)한 경우

년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	1차년도	유예	2차년도	3차년도
청년 상시 근로자수	4명	5명	3명	5명	7명

* 청년 1인당 12,000,000원 공제 (2021·2022년 귀속 청년 1인당 13,000,000원 공제)



02. 최저한세 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최저한세 제도 개념

조세감면(공제, 감면, 비과세 등 포함)을 적용 받더라도 납부해야 할 **최소한의 세금**



최저한세 계산방식(다음 중 **큰** 금액)

- ①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조세감면을 적용 받은 후 세액
- ②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조세감면을 적용 받기 전 과세표준 × 최저한세율



최저한세 세율

중소기업			그 외		
일반	유예기간		과표 100억원 이하	과표 1,000억원 이하	과표 1,000억원 초과
	1~4년	5~6년			
7%	8%	9%	10%	12%	17%

※ 최저한세 적용 시 조세감면 배제 순서

- 신고 : 납세자 자진 선택
- 경정 : 손금산입·익금불산입 → 세액공제 → 세액감면 → 소득공제·비과세

02. 최저한세 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알아두면 유익한
공제 · 감면 제도 안내



최저한세 **적용대상** 주요 **세액공제 · 감면**

- **내국법인** 또는 국내원천소득이 종합과세되는 **외국법인**이 적용대상 (당기순이익 과세특례 적용 **조합법인 제외**)

순번	감면 유형	조특법	조세감면제도	순번	감면 유형	조특법	조세감면제도
1	세액공제	§7의2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13	세액공제	§30의3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2		§7의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14		§30의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3		§10	R&D 세액공제(중소기업 제외)	15		§32④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4		§12②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16	세액감면	§6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100% 감면 외)
5		§12의4	기술혁신형 주식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17		§7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6		§13의2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18		§12의2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50% 감면)
7		§19①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19		§31④⑤	창업중소기업 등의 통합에 대한 세액감면 승계
8		§24	통합투자세액공제	20		§32④	창업중소기업 등의 법인전환에 대한 세액감면 승계
9		§29의3	경력단절 여성 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	21		§63	공장의수도권안(과밀억제권역제외) 이전 감면(중소기업)
10		§29의4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22		§64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11		§29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23		§96의2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12		§30의2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24		§99의9	위기지역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50% 감면)

02. 최저한세 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알아두면 유익한
공제 · 감면 제도 안내



최저한세 **적용제외** 주요 세액공제 · 감면

- 내국법인 또는 국내원천소득이 종합과세되는 **외국법인**이 적용대상 (당기순이익 과세규정 적용 **조합법인 제외**)

순번	감면유형	조특법	조세감면제도	순번	감면유형	조특법	조세감면제도
1	세액공제	§10	R&D 세액공제(중소기업)	14	세액감면	§85의6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
2		§96의3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15		§99의9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100% 감면)
3		§100의18	동업기업 세액공제 배분액	16		§99의11	감염병 피해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4		§104의32	용역제공자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17		§104의2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5		§126의6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18		§121의2	고도기술수반사업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6	세액감면	§6①⑥⑦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100% 감면), 추가감면	19		§121의2	외국인투자지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7		§12의2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100% 감면)	20		§121의4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의 조세감면
8		§6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중소기업 감면	21		§121의8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조세감면(100% 감면)
9		§63	공장의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22		§121의9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조세감면(100% 감면)
10		§63의2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23		§121의21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100% 감면)
11		§68	농업회사법인 감면(작물재배업소득)	24		§121의22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100% 감면)
12		§85의6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25		§121의22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100% 감면)

03.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 개념

농어업 경쟁력강화 등에 필요한 자원 확보 목적으로 법인세에 부가하여 과세되는 세목



농어촌특별세 계산방법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 조세감면*으로 인한 감면세액에 20%

* 비과세소득, 세액감면 · 세액공제, 소득공제, 조합법인 등에 법인세 특례세율의 적용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 주요 세액공제 · 감면 (농특세법 제4조 및 동령 제4조)

영농 · 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정규직근로자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R&D세액공제, 연구개발특구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감염병 피해 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 세액감면, 전자신고세액공제 등

04. 세액공제 · 감면 간 중복적용 배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적용 배제 개념

과다한 조세지원을 조절하기 위해 **한 과세기간**에 각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적용**을 제한



동일고용에 대한 세액공제 간 중복적용 배제(선택하여 공제 가능 §127조②)

-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vs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동일 과세연도에 주요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상호 중복적용을 배제

순번	감면 유형	조특법 조항	조세감면제도	순번	감면 유형	조특법 조항	조세감면제도
1	세액 감면	§6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1	세액 공제	§8의3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
2		§7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		§13의2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3		§63①	수도권 밖 공장 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3		§24	통합투자세액공제
4		§63의2①	수도권 밖 본사 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4		§25의6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5		§85의6	사회적기업 · 장애인 표준사업장 세액감면	5		§30의4	중소기업사회보험료세액공제 (7와는 중복가능)
6		§99의9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6		§104의14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알아두면 유익한

공제감면 제도안내

감사합니다